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
----------	----

제출년월일 : 2003. 3. 13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현행 구세감면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납세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시행상 미비점이 있는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지방세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법인(단체 포함)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과세하고 있어 과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개인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부 면제토록 함 (안 제5조)

나. 2003. 1. 1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 (안 제11조)

다. 2002. 1. 26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 (안 제14조)

3. 관계법령

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나. 행정자치부 허가 : 부산광역시 세정13400-20011(2003. 1. 3)호 통보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무료노인복지시설(개인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한다.)”로 한다.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로 한다.

제14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2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2002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에 의한 <u>유료노인복지시설</u>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u>유료노인복지시설</u>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u>무료노인복지시설</u> (개인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u>유료노인복지시설</u>(이하 <u>노인복지시설</u>"이라한다) ----- ----- -----<u>무료노인복지시설</u> 또는 <u>노인복지시설</u>----- -----</p>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p> <p>제14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p>	<p>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p> <p>-----</p> <p>-----</p> <p>-----</p> <p>-----</p> <p>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p> <p>-----</p> <p>-----</p> <p>-----</p> <p>-----</p> <p>-----</p> <p>-----</p> <p>제14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 -----</p> <p>-----</p> <p>-----</p> <p>-----</p> <p>-----</p> <p>-----</p>

